

대법원 2005. 2. 22 선고 2003다67052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참 조 조 문

민사소송법 제52조, 제136조, 제423조

재 판 경 과

대법원 2005. 2. 22 선고 2003다67052 판결

대전고등법원 2003. 11. 21 선고 2003나4035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정AA(소송대리인 변호사 이BA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간C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C 담당변호사 김BB)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03. 11. 21. 선고 2003나40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없이 경료된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가 2001. 9. 27.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 사찰의 1994. 3. 10.자 교도회의 결의는 불성립 또는 무효라 할 것이고, 위 결의에 의하여 제정된 정관 역시 무효이므로, 피고 사찰은 독립한 실체로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기 위한 사찰의 기구나 재산의 운영에 관한 규약이 없어 독립한 권리, 의무의 주체로서의 당사자능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이나 원심에서는 원고 사찰의 당사자능력과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에 관한 쟁점에 대하여만 원, 피고가 변론을 하고 심리가 되었을 뿐 피고의 당사자능력에 관하여는 아무런 변론이나 석명이 없었음에도,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소송의 심리과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고의 당사자능력의 문제를 재판의 기초로 삼기 위하여는 비록 그것이 직권조사사항이라 하더라도 원, 피고로 하여금 이 점에 관하여 변론을 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피고 사찰의 승려와 신도 등 인적 요소, 현재 피고 사찰의 사회적 활동 및 규약 등에 관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주었어야 할 것인데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소를 각하한 것은, 원·피고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법률적인 관점에 기한 예상 외의 재판으로서 원, 피고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였을 뿐 아니라 석명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강신욱 고현철(주심) 양승태